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0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7일, 운영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조항을 반영함(안 제3조).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제1호바목 신설).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2호타목~거목 신설).
- 국토안전관리원 신설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의2제2항).
- 준용 규정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

-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조항을 반영함(별표 1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되었음.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조항을 반영함(안 제3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되었으나, 2019년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조문이 옮겨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함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2019.4.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 <u>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u> ”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u>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조(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범위) 2. “ <u>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u>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u>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u> (이하 생략)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및 제21조에 따라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것임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항제2호타목~거목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함
- 국토안전관리원 신설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의2제2항)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

□ 국토안전관리원법(2020. 6. 9 제정)
우리나라의 시설안전을 책임져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의 제정으로 그 역할과 임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게 됨

- 준용 규정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
-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조항을 반영함
(별표 1 및 별지 제2호 서식)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파트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원 대상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

어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